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56

발의연월일: 2024. 7. 18.

발 의 자: 강유정 · 김영배 · 박희승

임미애 · 문정복 · 민병덕

조계원 • 박 정 • 김준혁

강경숙 · 위성락 · 권칠승

김한규 · 정을호 · 황정아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스포츠산업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등의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이에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도모하고자 한다(안 제3조제1항).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게임산업의 특성상,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 를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자 한다(안 제3조 의2 신설).

법률 제 호

게임산업진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협의하여"를 "협의하여 5년마다"로 하고,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연차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	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
립ㆍ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	립ㆍ시행) ①
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u>협의하여</u>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	협의하여 5년마다
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3조의2(연차 보고)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은 매년 게임산업 진흥
	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
	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